

#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1996. 5. 7.  
사회산업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6. 5. 1
- 나. 제출자 : 달서구청장(방문복지과장)
- 다. 회부일자 : '96. 5. 1
- 라. 상정 및 의결
  - 제4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6. 5. 4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 5. 4

## 2. 제안설명요지(설명자 :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 가. 제안사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및 자격을 확대, 완화하고 장학기금 조성방법의 다원화로 기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
- 나.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5조
- 다. 주요골자
  - 장학금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수혜 범위 확대(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현재 중·고등학생 재적학년 정원의 50%이내를 70%이내로 완화하고, 대학생에 대한 자격(성적 평균 80점(B학점) 이상인 자)신설 (안 제4조 제2호)
-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안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백창기)

본 조례 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에 대해 장학금 지급대상을 당초 고등학교까지에서 대학생까지로 확대하고 선발자격을 학교성적 50%에서 70%로 완화하였으며 장학기금조성도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확보토록 하는 것을 일반회계지원금, 달서BC카드수입금,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기타수입 등으로 다원화하여 기금확보를 용이토록 하였으며, 장학금지급시기를 상·하반기로 확대하여 저소득주민자녀의 장학금 수혜폭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답변자 : 방문복지과장 이남용)

| 질 의 요 지  | 답 변 요 지   |
|--|---|
| ○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학교성적 50%에서 70%로 완화하면 추천자(동장)의 재량권이 너무 많아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 ● 본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추천자(동장)의 재량권 남용을 제도적으로 방지 하겠음. |

5. 토론요지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 장학금 수혜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성적(50%)이 나빠 장학금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장학금지급조건완화 및 지급대상 확대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96-19 |
|----------|-------|

제출년월일 : '96. 4.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보건소장)

## 1. 개정이유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자격을 완화하고 장학기금 조성방법의 다원화로 기금을 확대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재 “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수혜범위 확대(안 제1조)
- 장학생의 자격을 현재 중·고등학생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를 70% 이내로 완화하고, 대학생에 대한 자격(성적평균 80점이상인 자) 신설(안 제4조제2호)
-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장학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안 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7조)
  - 장학생 선발 : 매년 학기개시 1개월전 → 매년
  - 장학금 지급시기 : 매학기 개시후 2개월이내 → 상·하반기 연2회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연1회)
- 장학기금 조성 방법의 다원화(일반회계 지원금, 달서BC카드 수익금,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로 기금을 확대하여 장학사업이 활성화 도모(안 제9조)

##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 4.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중·고등학교 학생에게”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전문대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층(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 중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으로 중·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7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성적 평균 80점이상(입학생은 입학성적이 20%이내)인 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학년의 납입금(입학금, 수업료등)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학년동안 지급하  
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  
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지원금
  2. 달서BC카드 수익금
  3.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등 기타 수입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5호 및 제26호를 제26호 및 제27호로 하고 동조례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5.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현행  | 개정 (안)   |
|---|--|
| <p>제4조(장학생의 자격) (생략)</p> <p>1. (생략)</p> <p>2. <u>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층(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이와 유사한 자중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 주민의 자녀로서 입학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u></p> <p>3. (생략)</p> | <p>제4조(장학생의 자격)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일반 장학생은 저소득층(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중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차)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재학생으로 중·고등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70%이내인 자로 하고, 대학생은 성적 평균 80점이상(입학생은 입학성적이 20%이내)인 자</u></p> <p>3. (현행과 같음)</p> |
| <p>제5조(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p> <p>① <u>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u></p> <p>② <u>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u></p>  | <p>제5조(장학금의 정원 및 지급액)</p> <p>① <u>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u></p> <p>② <u>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해 학년의 납입금(입학금, 수업료 등)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u></p>   |
| <p>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생략)</p> <p>1. <u>동장은 제4조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학기 개시 1개월전에 구청장에게 한다.</u></p>  | <p>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u>동장은 제4조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u></p>   |

| 현행   | 개정 (안)   |
|--|--|
| <p>2. (생략)</p> <p>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u>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학년동안 지급하되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2개월이내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u></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u>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u></p> <p>1. ~ 5.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p> <p>① <u>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이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지원금으로 확보한다.</u></p> <p>② ~ ④ (생략)</p> | <p>2. (현행과 같음)</p> <p>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u>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때로부터 당해학년동안 지급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학부모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u></p> <p>제8조(지급의 정지) ① <u>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구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p> <p>① <u>장학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u></p> <p>1. <u>일반회계 지원금</u></p> <p>2. <u>달서BC카드 수익금</u></p> <p>3. <u>장학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정찬조금등 기타 수입</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